

1. 개정 이유

대손 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 용역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외하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수불능의 사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적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규정(안 제4조 제3항 신설)

경영정상화 계획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규정함.

나. 정기에금이자율 조정(안 제6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정기에금이자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조정함.

다. 대손금 손금 산입에 해당하는 회수불능 사유 규정(안 제10조의4제1항 신설)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사유로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인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라.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1) 공익법인 추천 신청에 대한 기한 규정 등(안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로 하고,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법인등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로 함.

2)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18조의3제2항제2호)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법인을 고려하여 추천신청시 제출 서류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3) 공익활동보고서 제출의무 대상을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서 6년인 경우로 변경

4)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도 4개월로 연장함.

마.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22조제2항 후단 신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중간정산 근무연수는 새로운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무연수 산정 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규정 신설(안 제42조 신설)
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 이후 연속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출자법인의 간접 주식보유비율 계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의 요건 규정(안 제42조의5 신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내부 용역 거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으로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등을 규정함.

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대한 세부규정(안 제42조의6 신설)
100분의 20의 할증이 적용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를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 액이 적용되는 대량매매 등의 방법은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으로 규정함.

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계산 특례 정비(안 제4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출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계산시 사용하는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별 공제한도 계산방법,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등에 대한 취급 등 일부 계산식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7.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제6조 중 “18을”을 “12를”로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를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

거나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불가피하게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제18조의2의 제목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을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을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제6호”를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를 “(공익법인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립”을 “설립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설립된 기관”을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3년”을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로,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18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정기부

금단체등은”을 “공익법인등은”으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공익법인등의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말한다) 및 정관을”을 “말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로,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정 기부금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각각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

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근무기간은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가목의 율에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 적격구조조정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나.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2.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의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제44조제1호 중 “소득할 주민세”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times \frac{50}{100} \times \frac{C}{B+C+D}$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left(A \times \frac{50}{100} \times \frac{C}{C+D} \right) + \left(A \times \frac{50}{100} \times \frac{C}{B+C+D} \right)$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	

제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D: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제47조제2항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times \frac{75}{100} \times \frac{F}{E+F+G}$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left(A \times \frac{25}{100} \times \frac{F}{F+G} \right) + \left(A \times \frac{75}{100} \times \frac{F}{E+F+G} \right)$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G: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제64조제4항제1호 후단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65조제1항 중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를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6호까지, 제60호 및 제61호”를 “제5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의2 중 “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5, 제3호의6 및 제3호의10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각각 “공익

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11 및 제3호의12 중 “법정기부금단체”를 각각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단서”를 “단서 및 영 120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9항”을 “영 제86조의2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63호의6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별지 제63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1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의8서식,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3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추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분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⑫수시부과기간		

⑬법인구분	1. 내국 2. 외국 3. 외투(비율 %)					⑭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	-------------------------	--	--	--	--	-------	-------------	--	--	--	--

⑮종류별구분	종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⑯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상장법인	11	71	81	91		⑰신고구분	1. 정기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기타법인	30	73	83	93			3. 기한후 신고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⑱결산확정일	4. 중도폐업신고		
					⑲결산확정일		5. 경정청구		

⑲법인유형별구분	코드	⑲결산확정일	⑲납부일
⑳신고일			
㉑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분	여	부	구분	여	부
㉒주식변동	1	2	㉔장부전산화	1	2
㉓사업연도의제	1	2	㉕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㉖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㉗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㉘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㉙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㉚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㉛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㉜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㉜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㉝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2			

구분	법인세			계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㉞수입금액액	()			
㉟과세표준				
㊱산출세액				
㊲총부담세액				
㊳기납부세액				
㊴차감납부할세액				
㊵분납할세액				
㊶차감납부세액				
㊷조정반번호		㊸조정자	성명	
㊹조정자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금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㊺예입처	은행 (본)지점	
	㊻예금종류		
	㊼계좌번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고 안내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금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 :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 나.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4. 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⑮외부감사대상란·⑯신고구분란·⑰주식변동여부·⑱장부전산화 여부란·⑳사업연도제 여부란 :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㉔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기타기업(93)란에 "○"표시를 합니다.**
6. ㉔법인유형별 구분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금 용 기 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신용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유동화전문회사(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금 제외)(20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 목적의 영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안산협동조합(3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5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7. ㉔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㉔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9. ㉔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㉔사업연도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㉔결손금 소급공제법인세환급금신청란 ~ ㉔제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㉔기능통화채권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㉔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㉔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㉔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6. ㉔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㉔합계란 중 ㉔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㉔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㉔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㉔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㉔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㉔란과 ㉔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㉔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㉔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0. ㉔조정자관리번호, ㉔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1. ㉔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2.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붙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업 연 도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소득조정 금 액	㉔ 익 금 산 입	02									
		㉔ 손 금 산 입	03									
	㉔ 차 가 감 소 득 금 액 (㉔ + ㉔ - ㉔)	04										
	㉔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㉔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 손금산입	54										
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㉔ + ㉔ - ㉔)	06											
② 과 세 표 준 계 산	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㉔ = ㉔)											
	㉔ 이 월 결 손 금	07										
	㉔ 비 과 세 소 득	08										
	㉔ 소 득 공 제	09										
	㉔ 과 세 표 준 (㉔ - ㉔ - ㉔ - ㉔)	10										
③ 산 출 세 액 계 산	㉔ 선 박 표 준 이 익	55										
	㉔ 과 세 표 준 (㉔ + ㉔)	56										
	㉔ 세 율	11										
	㉔ 산 출 세 액	12										
	㉔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㉔ 세 율	14										
	㉔ 산 출 세 액	15										
	㉔ 합 계 (㉔ + ㉔)	16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㉔ 산 출 세 액 (㉔ = ㉔)											
	㉔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㉔ 차 감 세 액	18										
	㉔ 최 저 한 세 적 용 제 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㉔ 가 산 세 액	20										
㉔ 분 납 할 세 액 계 산	㉔ 가 감 계 (㉔ - ㉔ + ㉔)	21										
	기 한 내 납 부 세 액	㉔ 중 간 에 납 세 액	22									
		㉔ 수 시 부 과 세 액	23									
		㉔ 원 천 납 부 세 액	24									
		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㉔ 소 계 (㉔ + ㉔ + ㉔ + ㉔)	26									
	㉔ 신고납부전자산세액	27										
	㉔ 합	㉔ 합 계 (㉔ + ㉔)	28									
㉔ 감 면 분 주 가 납 부 세 액	㉔ 감 면 분 주 가 납 부 세 액	29										
	㉔ 차 감 납 부 할 세 액 (㉔ - ㉔ + ㉔)	30										
	양도 차익	㉔ 등 기 자 산	31									
		㉔ 미 등 기 자 산	32									
		㉔ 비 과 세 소 득	33									
㉔ 토 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	㉔ 과 세 표 준 (㉔ + ㉔ - ㉔)	34										
	㉔ 세 율	35										
	㉔ 산 출 세 액	36										
	㉔ 감 면 세 액	37										
	㉔ 차 감 세 액 (㉔ - ㉔)	38										
	㉔ 공 제 세 액	39										
	㉔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㉔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㉔ 가 감 계 (㉔ - ㉔ + ㉔ + ㉔)	41										
	㉔ 수 시 부 과 세 액	42										
㉔ 납 부 세 액	㉔ () 세 액	43										
	㉔ 계 (㉔ + ㉔)	44										
	㉔ 차감납부할세액 (㉔ - ㉔)	45										
㉔ 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	㉔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㉔ 세 율	60										
	㉔ 산 출 세 액	61										
	㉔ 가 산 세 액	62										
	㉔ 이 자 상 당 액	63										
	㉔ 납부할세액 (㉔ + ㉔ + ㉔)	64										
㉔ 세 액 계 산	㉔ 차감납부할 세액 계 (㉔ + ㉔ + ㉔)	46										
	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㉔ 분납세액계산범위액 (㉔ - ㉔ - ㉔ - ㉔ + ㉔)	47										
	㉔ 분 납 할 세 액	㉔ 현 금 납 부	48									
		㉔ 물 납	49									
		㉔ 계 (㉔ + ㉔)	50									
	㉔ 계 차 감 납 부 세 액	㉔ 현 금 납 부	51									
		㉔ 물 납	52									
		㉔ 계 (㉔ + ㉔) (㉔ = ㉔ - ㉔ - ㉔)	53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뒤쪽)

작성 방법

1. ①선박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명을 기입합니다.
2. ②선박순톤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순톤수를 기입합니다.
3. ④운항일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3항에 따른 운항일수를 기입합니다.
4. ⑤사용물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물을 기입합니다.
5.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③1톤당1운항일이익을 곱한 금액에 ④란에 기재된 일수와 ⑤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⑦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포인팅

사업자등록번호

[illegible]

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사 면 번호	구 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세 액 감 면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세액
	㉞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외	110		
	㉞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㉞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㉞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㉞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㉞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㉞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㉞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㉞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㉞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㉞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㉞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㉞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㉞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㉞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㉞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㉞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㉞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㉞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㉞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㉞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㉞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㉞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㉞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73		
	㉞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㉞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㉞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제1항제1·3·5호	197		
	㉞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제1항제2·4·6호	198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㉞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㉞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㉞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㉞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㉞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㉞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㉞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㉞ 소 계		170		
세 액 공 제	㉞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㉞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㉞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㉞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㉞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㉞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㉞ 상가임대료를 인화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㉞ 소 계		180		
	㉞ 합 계(㉞ + ㉞)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 ②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로 기입합니다.
- ㉠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로 기입합니다.
- ㉡세율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입합니다.
예시)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40(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㉟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제 1~6항	111		
㊱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제 2항	174		
㊲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제 4항	13E		
㊳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112		
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조의 2	179		
㊵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1조	123		
㊶	사업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33조의 2	192		
㊷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33조의 2	13A		
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13B		
㊹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2조제 4항	13F		
㊺	공공의 자원요소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116		
㊻	농공단지임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4조	117		
㊼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 68조	119		
㊽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96조	13I		
㊾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96조의 2	13N		
㊿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2조	124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18제 4항	13D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2	13H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조제 1항	13J		
㉃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조제 3항	13K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8	13P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9	13Q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제 1항제 1·3·5호	13R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9	13S		
㉈	사이버중소기업 투자진흥구역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0제 1항	13T		
㉉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1제 1항	13U		
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2제 2항	13V		
㉒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㉒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5조	131			
㉓	상생경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의 4	14Z			
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8조의 3 1항	14M			
㉕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8조의 3 2항	18D			
㉖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8조의 3 3항	18L			
㉗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제 1항제 1호	13L			
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제 1항제 3호	13M			
㉙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조제 2항	176			
㉚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조의 3	14T			
㉛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조의 4	14U			
㉜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3조의 2	18E			
㉝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9조	18H			
㉞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제 1항제 1호	134			
㉟	에너지저장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제 1항제 2호	177			
㊱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제 1항제 3호	14A			
㊲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제 1항제 4호	142			
㊳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제 1항제 5호	136			
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제 1항제 6호	135			
㊵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4	14B			
㊶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5	18B			
㊷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	18C			
㊸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7	18I			
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	14N			
㊺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2	14S			
㊻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3	14X			
㊼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3	18J			
㊽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4	14Y			
㊾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5	18A			
㊿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	18F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2	14H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3	18K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4 제 1항	14Q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4 제 3항	18G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 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8 제 1항	184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8 제 3항	14J			
㉆	제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4	14E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8 제 1항	14I			
㉈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8 제 2항	14K			
㉉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22	14O			
㊱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18제 4항	14L			
㊲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8제 4항	14R			
㊳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25	14P			
㊴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급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7제 8항	14V			
㊵	금사업자와 스크램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의 4	14W			
㊶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30	18M			
㊷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3조의 3제 1항	18N			
㊸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3조의 3제 3항	18P			
㊹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12	18Q			
㊺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13W			
㊻	소 계		149			
㊼	합 계 (㉒ + ㉓)		150			
㊽	공제감면세액 총계 (㉒ + ㉓)		151			
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㉕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 57조제 3항·제 4항·제 6항	18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과세· 면제· 소득공제	㉞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㉞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㉞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을 부칙 제10조·제40조	604	
	㉞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㉞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㉞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㉞ 합 계		6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⑥+⑦)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62D			
☞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627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622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62A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62F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611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62G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62J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613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62H			
☞	공공기관외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62K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62I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628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625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의2항	615			
☞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616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62P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7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8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2	629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631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62B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62E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62L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62M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620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62C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62N			
☞	국세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62O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	681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	682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8	683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9	684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	685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	686			
☞			621			
☞	합 계		640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3. 손금산입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 조정액	⑦ 세무 조정액	⑧ 합계 (⑥+⑦)
손 금 산 입	㉔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 제33제1항제1호	659			
	㉔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3제2항제2호	63B			
	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63J			
	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657			
	㉔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63L			
	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63M			
	㉔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의2	644			
	㉔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645			
	㉔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39제1항	63E			
	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4제4항	647			
	㉔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5제2항	63F			
	㉔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664			
	㉔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63G			
	㉔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650			
	㉔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651			
	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666			
	㉔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654			
	㉔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63N			
	㉔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63H			
	㉔ 신용회복촉진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63O			
	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63Q			
	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4항	63I			
	㉔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63A			
	㉔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63C			
	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제1항	63P			
	㉔ 합 계		656			
	㉔ 합 계		670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 납부세액
㉔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6조제7항	66A	
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68조제3항	66B	
㉔ 합 계		667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㉔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㉔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㉔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㉔ 기 타		775	
	㉔ 소 계		780	
법 인 세 법	㉔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781	
	㉔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㉔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㉔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㉔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787	
등	㉔ 기 타		785	
	㉔ 소 계		784	
㉔ 추가납부세액 합계(㉔ + ㉔)			79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증질지 80g/㎡]

작성방법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㉔, ㉔, ㉔)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㉔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㉔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㉔ 법인세란 합계액 중 ()안의 금액을 ㉔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㉔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㉔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㉔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사. 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아. ㉔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㉔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㉔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증질지 80g/㎡]

(앞쪽)

사업 연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근거법 조 항	② 계산명세	③ 감면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적용사유 발생일
조 세 특 례 제 한 법						
합	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만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계 산 기 준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4)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6)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7)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9)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1)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2)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3)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4) 공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5)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양도차익 × 50/100
(16)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7)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8)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19)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2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22)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23)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7)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8)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1)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2)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3)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4) 세안금융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5) 세안금융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8)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39)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40) 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2)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사업창신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3)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4)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사업창신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5)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5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99조의1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30,60/100)

- * 해당 법령에 "감면한다"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다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㉞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연 일 기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근거법 소항	계산기준	코드	계산 명세	공제대상 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I		
상생경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1%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자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7/100	14M		
합작·중소기업에 대한 유망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실하는 사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신성장·원격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0조 제4항 제3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14.1.1. ~ 14.12.31 : 발생액 × 3 - 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5,50)/100 15.1.1. ~ 15.12.31 : 발생액 × 3(8,10,15,20,25,30)/100	16A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10조 제4항 제3호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16B		
신성장·원격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제10조 제4항 제3호	15.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17.1.1. 이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40,50)/100 (지정장·원격기술 연구개발비) 17.1.1. 이후 발생액 × 20(30)/100	13M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제10조 제4항 제3호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금 × 10/100	18H		
연구·인력개발비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1호	14.1.1. ~ 15.12.31 :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8.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4.1.1. ~ 15.12.31 :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현황 중년 경우 16.12.31까지 종신증 적용 18.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1.1. ~ 14.12.31 :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7)/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1.1. ~ 14.12.31 :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20.1.1. ~ 20.12.31 :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21.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14.1.1. ~ 16.12.31 :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인력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 ~ 12.12.31 : 투자금액 × 7(부공제 3 - 4%는 증가금액 2 - 3%) 13.1.1. 이후 투자금액 × 7(부공제 4 - 5%는 증가금액 3 - 4%) (한도 : 1인당 투자금액 × 7,000천원(0 - 3,000천원) 1,000천원) 17.1.1. 이후 : 한도 : 5인당투자 총한도 × 1,000천원, 1,000천원, 2,000천원(한도)	14N		
산업수요충족고용확충을 위한 고용유지 인건비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기업(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기업(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기업(중견15)/100	18J		
근로소득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기업1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창년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창년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기업(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창년5만 ~ 29만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증액분의 100% 창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중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액분의 5(0%,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기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 50%	18G		
전직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직신고시 2만원	184		
전직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소득세 전직신고에 대리자수 × 2만원 *한도 : 연 5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 750만원) 한도액에 전직신고 부가처리에 대한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 × 3/100(증가액 5/100) *전년 위탁물류비(30% 미만) (단기 위탁물류비 - 단기 위탁물류비 × 3/100) *증가액 5/100(증가금액 5/100) *법인세 10% 한도	14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구분	근거법 조항	세 율 계 산 기 준	코드	세 율 계 산 명 세	공 제 세 율 액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8제1항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제2항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품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송장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 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소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8제4항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 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업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부양금리수급관계금액 - 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부양 금리수급관계금액)×50/100) +금리수급관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부 양금리수급관계금액×5/100) +금리수급관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회주 인발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적전과세연도 대비 증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분 취득가액 5%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분 취득가액 5% (증77% 중50%)	18P		
상가임대료를 인화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화액의 50%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투자금액 × 1(중33, 중50)/100 신성장 원가(기술 투자금액 × 3(중35, 중50)/100 추가공제: 적전 3년 인화율 투자금액 초과액 × 3(300기본공제 200% 한도)	13W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16 구분	17 사업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18 차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19 그 밖의 사유 로 인한 미공제 액	20 공 제 세 액 (15-16-17-18)	21 소멸	22 이월액 (19+20-21)	
		23 당기분	24 이월분	25 당기분	26 1차 연도	27 2차 연도	28 3차 연도	29 4차 연도	30 5차 연도	31 계						
	소계															
	소계															
합 계											주					

작성 방법

1. ㉠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 당기분란에는 ㉠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 이월분란에는 ㉠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 이월액을 적습니다.
5. ㉤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특례제한법, 제144조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앞쪽)

사업연도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 에 V표 합니다.)

[] 에

[] 아니오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① 연번	②국가명	③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공제한도	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⑧이월배제액	⑨차기이월액
				④전기 이월액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⑩ 매출원가 계상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⑫ 제조원가에 계상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⑭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합계(⑩+⑪+⑫+⑬+⑭)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
------	-------------------------------------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손금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손금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 ② 국가명란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 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㉔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㉕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㉖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㉗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㉘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㉙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 ㉔ ~ ㉙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사 업 연 도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 국가코드		
-------	--	--------	--	--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산출세액	
	⑫ 과세표준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공제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⑭ + ⑮)	
이월배제액	⑰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와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⑮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㉑ 사업 연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	㉔ 당초 이월 배제액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㉒-㉓-㉔=㉖)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합계≤㉓)	㉗ 이월배제액(㉑)	㉘ 차기이월액(㉕-㉖-㉗)
당 기							
합 계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 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 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 계를 적습니다.
-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 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⑥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적습니다.
-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 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times \frac{500}{1,000}) = 200$	$120 \times \frac{200}{400} = 60$	산출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times \frac{300}{1,000}) = 120$	$120 \times \frac{120}{400} = 36$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㉑~㉘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⑮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 ㉒ 사업연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 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 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말 광한도 방법을 적용한 법인의 이월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㉘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㉓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사업 업 도	·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수입금액		7(3.5)/10,000	3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과소신고	일반	수입금액		14(7)/10,000	32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부정 공제감면		공제 감면 세액		40/100	71		
납부지연		(원수) 미납세액	()	2.5/10,000	4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 금 명세서	미납부세액	미납부세액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산출금 \$82(10)	미납부세액금액		21(1)/1,000	61		
	불분명금액	불분명금액		2/1,000	62		
	산출금 \$82(5)	미납부세액금액		21(1)/10,000	67		
	불분명금액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제75조제2항 (근로소득 과다지급액)	미제출금액		25 (12.5)/10,000	96		
	불분명 등	불분명금액		25/10,000	97		
	소 계				11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주식등변동장명세서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미납부세액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주주명명세서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과다지급)상주주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발급명세서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세금계산서합계표	소 계				20		
	기보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모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현금카드영수증		발급거부(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입영수 수입금액	()	10(5)/1,000	41		
세금무대위로미제출·불분명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20(10)/100	98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에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가산세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합 계					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공제감면세액		40/100	72		
(원수) 미납세액	()	2.5/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65		
합 계			53		
미한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부정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미납부세액	()	2.5/10,000	90
합 계					91
법정납부기한 (. . .)					
납부일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8×(⑩/9))	⑮ 부정 (8×(⑪/9))	⑯ 부정 (국제거래) (8×(⑫/9))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작성 방법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에 적습니다.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 칸에 적습니다. 마.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 전 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지분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상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지분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금(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서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함/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금(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를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를 적용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간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거부명의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한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㉔란, ㉕란 및 ㉖란에 각각 적습니다.
- 중간에납부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를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 ·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구분	② 감면내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④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 비과세	㉞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8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㉞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㉞란 해당 금액
⑥ 소득공제	㉞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㉞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별지 제7호서식 ㉞란 해당 금액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공제) ×세율-산출세액
⑧ 세액 감면	㉞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㉞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㉞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㉞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㉞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8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㉞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㉞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㉞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㉞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㉞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㉞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㉞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㉞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㉞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제3호·제5호	197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㉞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제4호·제6호	198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㉞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㉞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㉞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㉞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㉞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㉞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㉞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㉞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제3호·제5호	13R		
	㉞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㉞		164		

구분	② 감면내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④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⑨ 세액 공제	㉞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㉞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㉞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㉞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㉞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㉞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㉞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㉞ 벤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㉞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㉞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㉞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㉞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㉞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㉞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㉞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㉞ 신성장기출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㉞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㉞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㉞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㉞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⑩ 감면세액 합계	㉞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㉞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㉞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㉞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㉞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㉞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㉞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㉞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㉞ 산업수요맞춤형 고등교육 등 재학생에 대한 한중협력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㉞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㉞ 석유제품 전 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㉞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㉞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㉞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㉞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㉞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㉞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㉞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㉞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⑩ 감면세액 합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1×2)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분	금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계			합계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⑨ 공제세액	비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계			

사업 연도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㉓]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초소득금액의 60% 한도」)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0, ③]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 [(③-⑥)>0]	
④ 한도액 {[(①-②)>0 }×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 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⑧)×30%		⑫ 한도초과액 [(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⑮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 ((⑧-⑪)×10%, 20%)		⑰ 한도초과액 [(⑬-⑮)>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㉓)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 ((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 ((⑥+⑪+⑮))	⑳ 한도초과액 합계 ((⑬-⑲))=(⑦+⑫+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㉔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㉔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㉑한도초과 손급불상입액	㉒기공제액	㉓공제가능 잔액 (㉑-㉒)	㉔해당사업연도 손급추인액	㉕차기이월액 (㉓-㉔)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㉔지출액 합계금액	㉗해당 사업연도 순금산입액	㉘차기 이월액 (㉔-㉗)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작성 방법

1. 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가장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순금입액 합계(㉦+㉧+㉨)에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 ㉣,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 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산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5. ㉣이월잔액 중 순금입금액: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순금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순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6. 해당당연도지출액 순금입금액란: ㉣금액에서 ㉤금액을 뺀 금액과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7. 해당초과과액란: ㉣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3. 지정기부금 손금입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소득금액 차감잔액란: ㉣금액에서 ㉤금액을 뺀 금액에서 ㉤란과 ㉥란의 순금입금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한도액계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부금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 차감금액-㉥)의 20%를 합니다.
9. ㉣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과액란에 적습니다.
1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순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과액이월액 순금입금란에 적습니다.
11.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 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순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령」(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앞쪽)

사업 연도	~	기부금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⑥금 액	비 고
① 유형	②코드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⑨소계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코드 10)							
	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코드 4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코드42)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 방법

1. ①유형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중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교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42"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교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 ⑨소계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사 업 연 도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 - 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frac{1,200\text{만원}}{\text{(중소기업 3,600만원)}}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월수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 + ⑥ + ⑦)			
문화접대비 한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와 (⑧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 + ⑩)			
⑫ 한도초과액(③ - 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연 도	· · ·		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일반수입금액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합 계 (① + ②)
금 액			

2. 접대비 해당 금액

④계 정 과 목					합 계	
⑤계 정 금 액						
⑥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⑦접대비 해당 금액 (⑤ - ⑥)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총 초과금액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총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⑬송금명세서 미 제출금액				
		⑭총 지출액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⑮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⑯총 초과금액				
	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 + ⑪ + ⑬ + ⑮)					
	⑱접 대 비 부 인 액 (⑥ + ⑰)					

작성방법

-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3만원
- 일반접대비 한도(④ ~ ⑧)
 -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 + ⑥ + 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마. ⑦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문화접대비 한도(⑨ ~ ⑯)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⑳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업 연 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 유목적사업 준 비금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 른 금액	⑥-1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결 손금 중 공제 대상액 (=㉔)	⑥-2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⑦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 조의25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1)-⑦-⑧]	⑩ 손금 산입률 50(80,100) ----- 100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또는 [(⑤+⑧)-(⑥-2)]	⑫ 손금부인액 [(②-⑪)>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 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 산입액	⑱ 잔 액 (⑭-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당 기)						
계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㉑ 사업연도	㉒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㉓공제한도 적용 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누적분)	㉔공제대상 이 월결손금 (㉒-㉓)	㉕기타 수익사 업 소득금액 [(④-⑤)-(⑦-⑧)]	㉖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 결손금	㉗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 결손금 (당기발생분) [Min(㉔,㉕)-㉖]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 소득금액란, ㉡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 ② 당기 계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용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⑥-1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공제대상액을 적으며, ㉢공제대상이월결손금란의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5.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되,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
8. ㉠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서 '⑥-2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손금부인액과 ㉢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0. ㉣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비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3. ㉦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어, ㉢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5. ㉨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6.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경우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누적금액)을 적습니다.
17. ㉤ 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8.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이월결손금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09)란의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19. ㉦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당기발생분)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사 업 연 도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내역					
① 구 분	② 적 요	③ 지출처		④ 금액	⑤ 비고
		상 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					
Ⅱ. 고유목적 사업비					
Ⅲ.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					
Ⅳ. 기 타					
⑥ 계					

작성 방법

1.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 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 (임원과 직원 급여구분 기재), 임차료, 전 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④ 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 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의 ㉠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 업 연 도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1. 자 본 금	01					
	2. 자 본 잉 여 금	02					
	3. 자 본 조 정	1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 이 익 잉 여 금	14					
		17					
	6. 계	2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 인 세	22					
	9. 지 방 소 득 세	23					
	10. 계 (8+9)	30					
11. 차 가 감 계(6+7-10)		31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 공제	⑪ 차감계	⑫ 기공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⑯ 기한 내	⑰ 기한 경과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9=㉕)								
계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⑰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⑳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㉑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 결 손 금	㉒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㉓ 합 계 (㉓=㉕+㉖)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㉗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㉑≥㉒의 경우는 "0", ㉑<㉒의 경우는 ㉒-㉑)
					㉔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㉕이월결손금 (㉕=⑨) ㉑과㉒ 중 작은 것에 상응하는 금액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㉗과목 또는 사항	㉘ 코드	㉙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㉚수정후 기초잔액 (㉙+㉑-㉒)	㉛비 고
			㉑증가	㉒감소		

작성 방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㉚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나.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 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바.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차액 등).

사. 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 ⑥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㉕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 감소내역란의 ㉒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 감소내역란의 ㉓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㉞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 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사. ⑮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⑰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㉗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㉔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㉗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㉞란 음수(△)금액]를 적습니다.

타. ㉕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파. ㉕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㉗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㉗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㉗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㉗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㉗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㉚란에서 ㉒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㉗~㉚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양쪽)

1. 제출법인 기본사항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상 장 변 경 일		⑤ 합 병 · 분 할 일		⑥ 사 업 연 도	. . . ~ . . .
⑦ 주 권 상 장 여 부	(1) 유가증권시장상장 (2)코스닥 (3)그 외(비상장 등)			⑧ 무 액 면 주 식 발 행 여 부	(1) 여 (2) 부

2.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⑨ 일자	⑩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⑪ 증가(감소) 자본금	⑨ 일자	⑩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⑪ 증가(감소) 자본금
		⑪ 종류	⑫ 주식수(출자자수)	⑬ 주당 액면가액	⑭ 주당발행(인수)가액				⑪ 종류	⑫ 주식수(출자자수)	⑬ 주당 액면가액	⑭ 주당발행(인수)가액	
⑯ 기 초							. .						
. .							. .						
. .							. .						
. .							. .						
. .							⑰ 기 말						

3.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⑮ 일련 번호	주 주 ·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자수)													기 말		㉒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⑮ 구분	㉑ 성 명 (법인명)	㉑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 번호)	㉒ 거주지국	㉓ 거주 지국 코드	㉔ 주식수 (출자 좌수)	㉕ 지분율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㉖ 주식수 (출자 좌수)	㉗ 지분율				
								㉖ 양수	㉗ 유상 증자	㉘ 무상 증자	㉙ 상속	㉚ 증여	㉛ 전환 사채 등 출자전환	㉜ 명의 신탁 등 실명전환	㉝ 기타	㉞ 양도	㉟ 상속	㊱ 증여	㊲ 감자	㊳ 명의 신탁 등 실명전환				㊴ 기타		
01	합 계																									
02	제출의무 면제 주주소개																									
03																										
04																										
05																										
06																										
07																										
08																										
09																										
10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4.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 보유여부 (1) 여 (2) 부

㉚ 자기주식 수(주)		㉛ 소각 목적 자기주식수		㉜ 소각 목적 외 자기주식수	
「법인세법」 제60조·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mm×42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 후표·관과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코스닥 포함)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㉑ 상장변경일과 ㉙ 합병·분할일만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㉑ 증권상장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상장법인의 경우 (01)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03)그 외(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V)합니다
-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로 구분하여 선택(V)합니다.
- 자본금(출자금) 변동사항(㉙부터 ㉛까지)은 - ㉙ 일지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일에 종류가 다른 주식에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㉙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㉛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사유	유상증자	무상증자	출자전환	주식배당	유상감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기타 (자사주소각 등)	이익소각 (자본금변동없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원인코드	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10

- * 액면가액 감소로 인한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㉙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㉙ 기초 및 ㉙ 기말의 ㉙ 주식수(출자자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㉙ 기말의 ㉙ 증가(감소) 자본금은 ㉙ 주식수(출자자수) × ㉙ 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㉙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㉙ 기말의 ㉙ 주식수(출자자수)는 ㉙ 기초의 ㉙ 주식수(출자자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 등 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㉙ 기말의 ㉙ 주식수(출자자수)와 ㉙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명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자수) 합계에서 변동상황(㉙부터 ㉛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자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7.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개(㉙부터 ㉛까지)는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 8.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각각 적습니다.
 -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㉙ 성명(법인명)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㉙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한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 구 분 | | 기 재 번 호 | |
|-------------------------------|---|---|--|
| (1) 원 칙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여받은 고유번호) |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 | |
|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개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㉙ 거주지국과 ㉙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알래스카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 10. 변동상황(㉙부터 ㉛까지)은 증권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자수)를 적습니다.
 - ㉙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자수)를 적습니다.
 - ㉙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자수)를 적습니다.
 - ㉙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자수)를 적습니다.
 - ㉙ ㉙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자수)를 적습니다.
 -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㉚)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말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 2.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 12. 30, 제22572호) 제20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 7. 25, 제23040호)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 12. ㉛ 자기주식 수련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체 수를 기재합니다.(단위는 주입니다)
 - ㉛소각목적 자기주식수련에는 소각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하고, ㉛소각목적외 자기주식수련에는 소각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합니다.

사 업	. . .	주식 ·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연 도	. . .	

1. 주식 발행법인 · 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	--	-----------	--	----------	--

2. 주식·출자지분의 구분

주식·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중소 4	일반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비상장법인)	6	7

3. 주식·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 방법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별지 제54호서식)”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3.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 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주식 발행법인·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주식·출자지분의 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2·3 주식으로 구분·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초과**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경영·분양·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권선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5)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7)
 -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④ 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⑤ 성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여받은 고유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⑦ 거주지국도코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 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 ⑧ 양도일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을, ⑨ 취득일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 양도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9. ⑩ 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전문모금기관 [] 한국학교 [] 민법상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 비영리외국법인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 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또는 제3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 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재단 법인
- (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 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6)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기부금영수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1. ㉔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락으로 신락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2. ㉕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㉖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필요경비(손급)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4. ㉗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 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5. (유의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21.00.00.>

공익법인등 [] 추천 [] 명칭변경 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

① 신청대상 법인의 구분	[] 민법상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 비영리외국법인
② 신청대상법인의 신청 구분	[] 3년: 최초 지정신청,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초과 [] 6년: 재지정 신청 [] 명칭변경

신청대상법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개시일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인적사항	주무관청명	주무관청 부서명
	사업내용	

기부금 모집내역	기부금 모집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기부금 관리방법						

명칭변경 사항	변경 전 법인(단체)명	변경 후 법인(단체)명
---------	--------------	--------------

대리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본인은 공익법인등 추천 및 명칭변경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류 및 명칭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추천신청 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기간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공익법인등의 대표(이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①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재단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 ②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3년: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6년: 공익법인등 지정기간 만료후 2년이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3. '명칭변경 사항' 은 명칭변경 신청시에만 작성합니다.(명칭변경 신청시 '기부금 모집내역' 은 작성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앞쪽)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⑨ 소재지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합 계				

(단위: 원)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7 지급건수	28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9 금액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5 금액
합 계					

제출인: _____ 년 월 일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1. 기본사항 : ① ~ ③란에는 **공익법인들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들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교육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14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19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⑭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㉔)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호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③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⑪ 점검결과
⑦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⑧	다-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통보기관의 장)

[인]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바(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을 지정기간으로 함
- ④, ⑦의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
- ⑥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바(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
- ⑩의 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⑪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공익법인등(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마.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 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전문모금기관)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공익법인등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교육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위 공익법인등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한국학교)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업 태 · 종 목	
소 재 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사 업 연 도	⑥결손금액		
결 손 금 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④직 전 사 업 연 도	⑩산출세액		
법 인 세 액 계 산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 (⑩ - ⑪)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 (⑬ = ⑩)		
	⑭차감할 세액 [(⑧ - ⑦) × 세율] [⑭ ≥ (⑩ - ⑫)]		
⑤환 급 신 청 세 액	⑮예상환급신청세액 (⑬ - ⑭) (⑮ ≤ ⑫)		
계 산	⑯기 환급세액		
	⑰환급신청세액 (⑮ - ⑯)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⑱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⑲예 금종류	
	⑳계 좌 번 호	예금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인)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 화 번 호
	⑤ 본 점 소 재 지	
⑥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가능이익

⑦ 당기순이익	⑧ 유가증권 평가이익	⑨ 유가증권 평가손실	⑩ 이월이익 잉 여 금	⑪ 이월결손금	⑫ 이익준비금	⑬ 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⑭ 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⑮ 실제배당액	⑯ 소득공제 해당여부 (⑭ ≤ ⑮)	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⑱ 소득공제액 MIN(⑮, 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9항 및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시 ⑭, ⑮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앞 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①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인적 사항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법인 구분	⑥ 합명회사	⑦ 합자회사	⑧ 법무법인 법무조합	⑨ 특허법인	⑩ 노무법인	⑪ 법무사 합동법인	⑫ 법무법인 (유한)	⑬ 회계법인	⑭ 세무법인	⑮ 관세법인	⑯ 조 합	⑰ 익명조합	⑱ 합자조합	

②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배당액 지급법인		⑲ 법인 명	⑳ 사업자등록번호	
배 당 액 현 황	㉑배당받은 날짜	㉒배당받은 금액	㉓배당받은 날짜	㉔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금액 합계			

③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동 업 자			㉞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㉚성명 (법인명)	㉛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㉜주소(소재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9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 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 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세법**」 제75조의14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 으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⑲·㉞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㉑·㉒란에는 동업기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 ㉚·㉛·㉜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㉞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1. 법인과세 신탁재산 기본사항(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2. 신수탁자 선임(법인세법 제109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 새로운 수탁자 선임 (「법인세법」 제109조의2제1항)
[] 전수탁자의 임무 종료 (「법인세법」 제109조의2제2항)
가. 새로운 수탁자(신수탁자)

③ 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		⑥ 사업장소재지	
⑦ 선임 일(승계일)		⑧ 선임사유(종료사유)	

나. 전 수탁자			
⑨ 명칭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사업장소재지	

3. 대표 수탁자 변경(법인세법 제109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가. 변경 후 대표수탁자			
⑬ 명칭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대표자		⑯ 사업장소재지	
⑰ 변경일		⑱ 변경사유	

나. 변경 전 대표수탁자			
⑲ 명칭		㉑ 사업자등록번호	
㉑ 대표자		㉒ 사업장소재지	

「법인세법」 제109조의2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1.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3. 대표수탁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체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유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산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분 ⑫ 기부자	⑧ 합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인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⑧ ~ ⑩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frac{1,200\text{만원}}{(\text{중소기업 } 3,600\text{만원})}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월수}(\quad)}{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⑦ 수입금액 기준	⑥ 소계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 한법」 제136 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⑫ 한도초과액(③-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⑭ 연결법인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접대비 한도초과액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	⑲ 접대비 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⑬×⑲/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⑩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3만원
-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
-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⑬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⑲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⑩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㉔]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다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0, ③]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다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 [(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⑪)>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다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⑧)×30%		⑫ 한도초과액 [(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다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⑮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 ((⑧-⑪))×10%, 20%)		⑰ 한도초과액 [(⑬-⑮)>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㉔)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 (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⑮)	⑳ 한도초과액 합계(⑬-⑮)=(⑦+⑫+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㉑기부금 코드	㉒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㉓기공제액	㉔공제가능 잔액(㉒-㉓)	㉕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㉖차기이월액 (㉔-㉕)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㉗기부금 코드	㉘지출액 합계금액	㉙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㉚차기 이월액 (㉘-㉙)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작성방법

- ①소득금액 계산: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㉞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⑧기부금 합계액 (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⑨손금산입 합계(⑥+⑪+⑮)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③, ⑨, ㉑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㉘-㉙)>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㉕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⑥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⑥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⑭ 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⑥소득금액 차감금액-⑪)의 20%로 합니다.
- ⑮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⑮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㉘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①기부금종류	②기부금 코드	③연결법인명	④사업자 등록번호	⑤기부금 한도초과액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⑤×⑦÷⑥)
합 계							

2.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⑨연결법인명	⑩사업자 등록번호	⑪그 밖의 기부금 지출액	⑫연결전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⑭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 계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⑮기부금종류	⑯기부금 코드	⑰연결법인명	⑱사업자 등록번호	⑲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	⑳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합계액 (공제가능액)	㉑해당법인 한도 초과 이월액 (공제가능액)	㉒한도 초과 이월액손금산입 개별 귀속액 (⑲×㉑÷⑳)
합 계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㉓ 사업연도	㉔ 기부금 종류	㉕기부금 코드	㉖연결 법인명	㉗사업자 등록번호	㉘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㉙기공제액	㉚공제가능 잔액(㉘-㉙)	㉛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㉜차기이월액 (㉚-㉛)
합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00	소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과소납부세액		40/100	47	
		부정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2.5/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 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부정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2.5/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 (공률소득 간)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불분명등		25/10,000	97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 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점수) 수입금액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		20(10)/100	98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국제거래)	⑫ 계	⑬ 일반 (7×(9/8))	⑭ 부정 (7×(10/8))	⑮ 부정(국제거래) (7×(11/8))
토지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제기부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기부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5/10,000, 「국제기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로 2019.2.12.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9조에 따라 2019.2.12.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기부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
 -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4의3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5/1,000 →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로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부분부터 적용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서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를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를 적용

** 2016.12.31. 이전에 제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서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를 적용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부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응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부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직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를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① 과세표준		세율	② 세 액
구 분	금 액	20%	
③ 법인세 감면세액			
④			
⑤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⑥ 구 분	⑦ 감 면 내 용	⑧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 드	⑨ 감 면 세 액 (숫자금액)	비 고
⑩ 비과세	㉞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㉞란 해당 금액
	㉞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㉞		606	()	
⑪ 소득 공제	㉞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별지 제7호서식 ㉞란 해당 금액
	㉞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㉞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㉞		458	()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세율-인출세액
⑬ 세액 감면	㉞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㉞란 해당 금액
	㉞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㉞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㉞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㉞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㉞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㉞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㉞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㉞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㉞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㉞ 상가건물 물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㉞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I		
	㉞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㉞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제3호·제5호	197		
	㉞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제4호·제6호	198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㉞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㉞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㉞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㉞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㉞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㉞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㉞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㉞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제3호·제5호	13R		
	㉞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㉞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⑭ 세액 공제	㉞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I		별지 제8호서식(갑)의 ㉞, ㉟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㉞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㉞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㉞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㉞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㉞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㉞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㉞ 벤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㉞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㉞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㉞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㉞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㉞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㉞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㉞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㉞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㉞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㉞ 초연결 네트워킹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㉞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㉞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㉞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㉞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㉞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㉞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㉞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㉞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㉞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㉞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㉞ 산업수요맞춤형 고등교육 등 재학생에 대한 한창학원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㉞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㉞ 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㉞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㉞ 금사업자와 스캐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㉞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㉞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㉞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㉞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㉞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㉞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㉞		165		
⑮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

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① 과세표준	세율	②세액
구분	금액	20%
③ 법인세 감면세액		
④		
⑤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⑥ 구분	⑦ 감면내용	⑧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⑨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⑩ 비과세	㉞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 · 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
	㉞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㉞		606	()	
⑪ 소득공제	㉞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별지 제7호서식 ⑥란 해당 금액
	㉞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㉞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㉞		458	()	
⑫ 비과세 · 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선출세액
⑬ 세액감면	㉞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㉞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㉞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㉞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㉞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 · 제40조	13B		
	㉞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㉞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㉞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㉞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㉞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㉞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㉞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임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I		
	㉞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임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㉞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임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 · 제3호 · 제5호	197		
	㉞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 · 제4호 · 제6호	198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임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㉞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㉞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㉞ 국가식품클러스터 임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㉞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㉞ 국가식품클러스터 임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㉞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임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㉞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임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㉞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임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 · 제3호 · 제5호	13R		
	㉞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임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㉞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⑬ 세액공제	㉞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㉞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㉞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㉞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㉞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㉞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㉞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㉞ 벤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㉞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㉞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㉞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㉞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㉞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㉞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㉞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㉞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㉞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㉞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㉞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㉞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㉞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㉞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㉞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㉞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㉞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㉞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㉞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㉞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㉞ 산업수요맞춤형 고등교육 등 재학생에 대한 한중유관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㉞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㉞ 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㉞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㉞ 금사업자와 스킵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㉞ 우수 선회주 인준 국제물류추진사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㉞ 소재 · 부품 · 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㉞ 소재 · 부품 · 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㉞ 상가임대료를 인화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㉞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㉞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W		
	㉞		165		
⑬ 감면세액합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③ 법인세 감면세액란: ⑬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⑫ 비과세 · 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⑧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⑩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⑪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3. 그 밖에 ⑩ 비과세, ⑪ 소득공제, ⑬ 세액감면, ⑭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처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결손금 공제) ①·② (생략) <신설>	제4조(결손금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 ----- 12를 -----.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신설>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불가피하게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생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8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생략)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 ----- ----- -----.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 -----
1.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공익법인등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나. 삭 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	-----	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	
류	--	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	가. ----- 공익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	
부금단체 추천서	법인등 -----	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법	-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	----- 등
④ 삭 제		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에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	는 서류-----
범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② -----	다)	-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청서류”라 한다)를 국세청장	----- 해당 분기	6.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	6. -----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 공익법인등 -----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국세청장-----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	-----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	-----.	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	-----
출해야 한다.		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	-----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지정	1. ----- 공익	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
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	법인등 -----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7. -----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2. ----- 설립 또는 등록----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	-----
각 목의 서류	-----	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가. -----	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	----- 6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	우에 한정한다)	-----

③ 국제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⑤ (생략)

⑥ 지정기부금단체등은 명칭이

③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

공익법인등

--.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익법인등은 -----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8조제3
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
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
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
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
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
에 보고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
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

공
익법인등의 정관 및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말한다)를 -----
----- .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

----- 공익법인등-----

----- .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

4개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③ ~ ⑤ (생략)
<신설>

지급한 퇴직급여의 근무기간은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제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가목의 율에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 적격구조조정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나.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2.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 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삭제>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삭제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의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신 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 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 \times \frac{50}{100} \times \frac{C}{B+C}$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left(A \times \frac{50}{100} \right) + \left(A \times \frac{50}{100} \times \frac{C}{B+C} \right)$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

1. -----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times \frac{50}{100} \times \frac{C}{B+C+D}$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left(A \times \frac{50}{100} \times \frac{C}{C+D} \right) + \left(A \times \frac{50}{100} \times \frac{C}{B+C+D} \right)$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이 해당 내국법인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관련된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D: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 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A \times \frac{75}{100} \times \frac{E}{D+E}$
나. 연구개발비용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A \times \frac{25}{100}) + (A \times \frac{75}{100} \times \frac{E}{D+E})$
비교: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 E: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 -----

--

구분	계산식
가. 연구개발비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A \times \frac{75}{100} \times \frac{F}{E+F+G}$
나. 연구개발비용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A \times \frac{25}{100} \times \frac{F}{F+G}) + (A \times \frac{75}{100} \times \frac{F}{E+F+G})$
비교: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연구개발비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G: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	

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③ (생략)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략)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u>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u>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 ~ ⑧ (생략)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	<u>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u>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 -----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 ②----- ----- -----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u>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생략)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 및 제61호의 서류 중	<u>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u>----- -----.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현행과 같음) 제82조(서식) ① ----- ----- -----. ----- ----- ----- ----- ----- ----- ----- 제56호까지
---	--	---	---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 --.
1. ~ 58. (생 략)	1. ~ 58. (현행과 같음)
59. 삭 제	
60. 영 제1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삭 제>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1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82호서식	
다.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82호의2서식	
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83호서식	
마. 해외부동산 취득·투자비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84호서식	
61. 영 제164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	⑦----- -----

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3의2. ----- ----- ----- -- 공익법인등 -----
3의3.·3의4. (생 략)	3의3.·3의4. (현행과 같음)
3의5.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	3의5. ----- ----- 공익법인등 -----
3의6. 제18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3의6. ----- ----- 공익법인등 ----- -----
3의7.·3의8. (생 략)	3의7.·3의8. (현행과 같음)
3의9. 삭 제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3의10. ----- ----- 공익 법인등 ----- -----
3의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1. ----- ----- -- 공익법인등----- ----- -----
3의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	3의12. -----

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 식의 <u>법정기부금단체</u>(한국학 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 과 보고서 3의13. ~ 4. (생 략) 4의2.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u>명목회사설 립(변경)신고서</u> 4의3. 영 제86조의2제9항 <u>단서</u> 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 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4의4. ~ 9. (생 략) 9의2. 영 제86조의2제9항에 따 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 득공제신청서 9의3. ~ 11. (생 략) <u><신 설></u> 12. ~ 16. (생 략) ⑧ ~ ㉔ (생 략)	----- -- <u>공익법인등</u>----- ----- ----- 3의13.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4의3. ----- <u>단서</u> 및 영 120조의4제3항----- ----- ----- 4의4. ~ 9. (현행과 같음) 9의2. 영 제86조의2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 ----- 9의3. ~ 11. (현행과 같음) <u>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 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 고서</u> 12. ~ 16. (현행과 같음) ⑧ ~ ㉔ (현행과 같음)
--	---